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1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김태년 · 김준형 · 맹성규

이기헌 • 손명수 • 황명선

박균택 · 김영진 · 김태선

이훈기 · 정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,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 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설치·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7의 제목 중 "설치"를 "설치 및 이용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이용자 부담"을 "이용자 부담, 이용요금의 감면 기준"으로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 우영 경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	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
조리원 <u>설치</u>) ① (생 략)	조리원 설치 및 이용지원) ①
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
	수・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
	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
	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공
	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
	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・운영	<u>③</u>
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	
련, 모자동실 설치·운영, <u>이용</u>	<u>oj </u>
<u>자 부담</u> 및 저소득 취약계층	자 부담, 이용요금의 감면 기준
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	
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	
령으로 정한다.	<u>.</u>
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는	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
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	
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<u>.</u>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지
	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
	설치・운영 경비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